###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

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, 제29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」 제41조제2항,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·위탁된 재산의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직할 관리재산"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  - 1.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위임규정"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
  - 2.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
  - 3. 「국유재산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정한 재산
  - 4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7조, 제20 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재산
  - ② "시·도 관리재산"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·도

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「도로법」 등 개 별법령에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.

- 1.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 구거인 재산
- 2. 사실상 공공용 도로·구거 등(통행로, 배수목적)으로 이용하고 있거나,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·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
- 3.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·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권리보전한 재산
- 4.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도로 잔여지 등 재산
- ③ "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"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)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- 1.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
- 2.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
- 3. 고속국도로 사용 중인 재산
- 4. 고속국도의 폐도
- 5.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,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

- 6.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
- ④ "재산관리관"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, 사무 위임의 단계·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,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국(국토교통부)로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,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4조(보고절차 등) ①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결산 등 업무는 재산관리 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 · 위탁

제5조(관리사무의 위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 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. 다만,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.

#### 1. 재산관리관

가.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,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 · 팀장(직접 관

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- 나.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 및 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」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(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지방국토관리청장, 지방항공청장,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, 항공·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,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, 책임운영기관장 등)
- 분임재산관리관: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, 제32조, 제42조 및 제53조의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(국토관리사무소장, 항공관리사무소장, 비행점검센터장, 공항출장소장,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,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장,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등)
  시・도지사는 시・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이하 "시・군・구청장"이라 한다)은 분임재산관리관이되다.
-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관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.
- ④ 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·폐지된 경우에는 동 회계의 재산관리 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임면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위임사무의 범위)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하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

- 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·보수·관리하여 야 한다.
- 1. 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
- 2.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
- 3.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
- 4.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・등록, 그 밖의 필요한 조치
- 5.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
- 6.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
- 7.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
- 8.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
- 9.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
- 10.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
- 11.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
- 12.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
- 13.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,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
- 14.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
- 15.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

- 16.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
- 17.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
- 18.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
- 19.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
- 20.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
- 21.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·변경 및 이용·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
- 22.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
- 23. 「국유재산법」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·무상귀속 협의
- 24. 「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
- 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, 재산권·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 정처분·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③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용도폐지사무는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한다.
- **제7조(관리사무 위탁)** ① 법 제29조 및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한다.

- ② 위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.
-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료·사용료,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,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및 위임 규정 기준에 따르되,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위탁재산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도로 관리과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한다.
- 제8조(위탁사무의 범위)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임규정에 따른 관리·처분업무와 관리전환 사전협의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재산을 유지·보수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합병·겸용재산의 관리) ① 경지정리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을 위임·위탁관리하는 기관 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② 도로 및 구거 등의 시·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등 직할 관리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,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 업무는 시·도지사가 행한다.
- 제10조(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) ① 관리기관 간에 재산교환,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·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인계·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.
  -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④ 위임·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·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 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.
- 제11조(관리기관간 분쟁조정) 위임·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,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·처분한다.
- 제12조(폐도부지의 관리) ① 「도로법」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·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. 다만, 고속국도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도로관리청은 폐도가 발생한 경우에 시·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통지·인계하여 재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도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허 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.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.
- ④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장래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유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·처분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3조** 삭제

###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

- 제14조(기부채납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도로·구 거 등의 공공시설·대체시설은 국가(국토교통부)로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예정인 경우는 예 외로 한다.
  -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은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제15조(관리전환 취득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다른 중앙

관서의 장과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제16조(잔여지 등의 관리)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, 매년 말과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이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산 관리·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할 수 있다.
  -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, 환매권의 소멸여부,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·처분하여야 한다.
  - ③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,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,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·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중복보상의 방지) ①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,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보상여부를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8조(토지의 지목변경)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, 하천, 수도,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,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

- 제19조(조건부 사용허가) ①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 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  - 1. 「민법」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·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.
  - 2. 「민법」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
  - 3.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, 구거 등에 설치하는 지상·지하 시설물로서,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.
  -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,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점용·사용허가기준의 준용)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「도로법」에 따

- 른 도로점용허가,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점용허가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 등 타 법령 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제21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· 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
  - 2. 시설물 관계자에게 수의매각·양여가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예정인 경우
  - 3.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시에 재산상 손실이 커서 철거를 유보한 경우
- 제22조(도로 등 원상복구) ①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·구거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 제5장 용도폐지

- 제23조(용도폐지) 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사실 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.
  - 1.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

능 여부

- 2.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
- 3.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
- 4.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
- 5.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(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)의 필요 여부
-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. 다만,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4조(이해관계인 협의) ①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,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전환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용도폐지 구비서류)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·보관하여야 한다.
  - 1.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, 민원서류, 현황사진, 현지

조사보고서 등 자료

- 2. 지적도(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) 및 토지대장
- 3. 도로.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
- 4. 등기부등본(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으로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, 보관)
- 제26조(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)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 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관리처분

- 제27조(손실보상 처분협의) 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양여재산의 지적분할) ①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.
  - ②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

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.

- 제29조(무상귀속 등 협의) ① 「국유재산법」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1. 무상귀속 · 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
  - 2.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
  - 3.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
  - 4. 지적도(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)
  - 5. 무상귀속토지 조서(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)
  - 6.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
  - 7.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
  - 8.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
  - 9.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
  - ②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도, 하천, 수도, 공항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 공시설(제방도로, 복개도로 등)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 의하여야 한다.
  -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 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 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

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 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(특별회계 등의 재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)하여야 한다.

- 제29조의2(사전협의)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·관리전환·매각·교환·양여하려는 경우,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정책의 수립·총괄 등을주관하는 본부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.
  - 1.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감사원 보고 또는 총괄청의 승인(협의)이 필요한 경우
  - 2. 장래의 행정수요 등 관련 정책적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제7장 대장관리 등

- 제30조(취득재산의 전산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시스 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손실보상, 미불용지보상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, 산하기관,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, 취득금액,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(이하 "국유재산대장"이라 한다)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

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431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 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